

표준을 둘러싼 법률문제



방석호
홍익대 법학과 교수

I. 개관

표준 (standard)은 ‘기술적 선택사양 (technical specification)’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는 정보를 만든 사람의 손을 떠나 네트워크에서 기기들을 통해 하나의 데이터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종의 공통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1983년에 나온 유럽공동체 이사회 지침 (EU Council Directive 83/189) 제 1조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따르되, 강제되지는 (compulsory) 않으며 표준화 기구에 의해 공인된 기술적 선택사양”으로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좋은 언어는 표현을 효율적으로, 간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변화에 따라 언어 자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좋은 표준도 서로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간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또한 좋은 표준은 공식적 기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던

(소위 법적 표준), 경쟁을 통한 시장 원리에 의해 선택되던 (소위 사실상의 표준) 기술 발전에 따라 이미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탄생하게 된다.

특히 표준화(standardization)가 공식적 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때 많이 지적되는 시간적 지체의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사실상의 (de facto) 표준이 갖는 우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법적(de jure) 표준의 설정은 이용자는 물론이고 시장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는 중소업체, 그리고 제 3자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표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 차원의 구매에서 표준의 문제를 다루게끔 하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표준과는 상호보완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준은 시장의 발전에 필수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널리 채택되면 창조와 변화를 더디게 함은 물론 새로운 시장의 형성도 저

해하게 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표준의 설정은 미래의 환경을 예측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구체적 범위와 설정을 위한 적정 시점의 선택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표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기능(function)의 범위를 최소화한다면 시스템 전체의 호환성이 저해될 확률이 커지게되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준의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폐단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간의 접점을 발견, 표준을 위한 적정 범위의 설정을 하여야만 한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형성은 보통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탄생되는 시점의 설정 역시 같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시장이 미처 형성되기 전에 너무 빨리 표준화가 행해지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만이 선택되는 기회 자체가 상실될 수 있고, 너무 늦게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시장 자체의 혼란이 가중되게 된다. 기술 발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시장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단계에 표준이 설정되면 기술 발전을 시장 발전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만약 시장이 필요에 의해 먼저 형성되고 기술은 사후 보완적으로 발전되는 구조에서는 표준 설정의 시점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도 표준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과의 함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정보 기반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형성 여부와 관련 시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표준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연구해야만 한다. 이하에서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표준을 둘러싼 중요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표준을 둘러싼 생점들

1. NII에서의 표준 설정 모델

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서 표준이 설정되는 유형은 대체로 시장 질서에 맡기는 모델 (Applications Model)에서부터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델 (Telecommunications Model)로 크게 구분되며, 인터넷은 중간 정도의 모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Applications Model은 컴퓨터 시장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선도기업에 의해 사실상의 표준 (de facto standards)이 설정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경쟁 기업들의 또 다른 표준이 설정됨으로써 상호간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표준이 선택되는 동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Telecommunications Model은 진입 장벽 때문에 자연 독점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통신 산업의 경우 (미국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상호접속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기구와 같은 외부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유형을 일컫는다. 개별 국가 나름대로 통신 산업에서의 규제 완화 (deregulation) 과정을 겪으면서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한 정부가 표준제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Telecommunications Model에서의 표준은 규제가 완화된 산업에서의 시장 실패 문제점을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고속도로에서의 복잡한 망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한편, 인터넷에서의 표준은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 표준이 어떻게 설정되는가? 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즉 표준은 미래의 기술 발전을 예측하면서 동시에 이를 채택하는 비용이 적어

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넷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은 점점 복잡하게 되지만 인터넷은 새로운 예측이 자연스럽게 실험되고 검증될 수 있다는 구조적 장점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인터넷에서의 호환성(interoperability)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합의(consensus)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망의 디지털화에 대비해 7개의 모델(seven-layer reference model)로 구성된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표준이 장기간에 걸쳐서 국제 표준 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 반해, 인터넷에서는 미래 예측적인 성격과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적 성격의 표준이 양분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호 융합되어 반복, 검증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들이 인터넷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은 표준의 설정이 이제는 개별 산업 단위로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상기 할 때 인터넷은 하나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표준을 위한 콘소시움

정보산업에서 표준화 과정을 통해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표준을 위한 기업간 연합(consortium)이 행해진다는 점이다.

그러한 콘소시움은 일시적으로 몇몇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거대한 콘소시움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약 500개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의 재(再)사용을 위해 연합한 Object Management Group (OMG)는 대표적 예가 된다.

콘소시움이 만들어지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80년대 후반 컴퓨터 산업의 침체기에 개별 기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호환성의 문제, 비싼 응용 프로그램 비용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개망(open system) 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콘소시움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고객 위주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창, 소비자 위주의 호환성을 강조한 UNIX 모델에 대항해 IBM과 Apple가 연합하여 별도의 표준을 만든 것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방어적 차원의 콘소시움이라고 할 수 있다.

콘소시움은 경쟁자들끼리(horizontal), 또는 이종기업들끼리(vertical) 이루어질 수 있고, 주식회사, 협회, 한시적 이해 단체, 무역 연합(trade associations) 등의 형태를 떨 수 있다. 또한 콘소시움의 구체적 대상은 특히 기술(patentable technology), 선택 사양(specifications), 플랫폼(platform) 등이 될 수 있다.

만약 표준을 담당하는 기구를 통한 것보다도 콘소시움을 만들어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이 만들어진다면 시간과 비용은 크게 절약될 수 있음은 물론,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표준이 탄생되는 장점이 있게 된다.

또한 공식적 기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제정 절차의 시간적 지연, 호환성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법적 표준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치유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체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콘소시움의 형성은 이용자와 기타의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법 위반 등의 폐단도 발생할 수 있다.

3. 정부의 역할

미국에서 최대의 단일 구매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만드는

표준은 NATO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체들의 표준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표준 제정이 정부와 기업체의 사실상 합작 형태로 이루어지는 좋은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건강(health), 안전(security), 통신, 정부조달, 그리고 국제 거래 등의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민간의 역할로 간주되어져 왔다.

표준 설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대표적 사례로 FCC에 의한 HDTV 표준 설정을 들 수 있다. FCC는 1980년대 초 AM스테레오의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시장에 맡긴 것과 달리 일본이 설정한 아날로그 방식의 HDTV 표준에 대항하여 디지털 방식으로의 표준 설정을옹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표준 설정에 담긴 정치적, 경제적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시장을 확장하거나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콘소시움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의 수는 한정되기 때문에 여타의 사업자나 이용자는 일종의 무임승차(free-riding)를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결국 표준을 위한 투자의 액수가 전체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NII처럼 시스템과 표준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에 들인 비용의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적은 투자와 이익 회수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의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신규기술의 경우, 또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관리 등 공공의 이익

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표준화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재정적 보조를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일관된 움직임은 없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해당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표준화 내지 망구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상대적으로 표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4. 표준과 지적 재산권

실용성을 요건으로 하는 특허에서 실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간접적 배경이 되는 것(소위 underlying functionality), 표현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에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만들어 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structure), 순서(sequence) 등이 지적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가?

표준을 둘러싼 이러한 것들이 저작권과 특허권의 요건에 비추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의 문제는 해당 권리의 보호 범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답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것을 알기 위해 해체하는 것(decompilation)이 저작권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의 문제는 많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법에 의한 보호범위 자체가 표준을 둘러싸고 대두되는 여러 기술적 표현들에 대해 모호하다는 것은 실제 표준화를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표준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거나 또는 원도우를 위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Microsoft사의 전략과 같이 사실상 공개된 표준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지적 재산권에 의한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실상의 표준이 쉽게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 표준을 가진 자에게는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반대의 이해 당사자에게는 법적 보호를 뛰어 넘어서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기 위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던,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던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 자유 영역에 속한다.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표준이 지적 재산권을 무시한 채로 만들어진다면, 또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정하고도 적정한 조건으로 자신의 권리를 라이센스 하지 않음으로써 표준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모두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유럽연합 위원회 (Commission)가 1992년에 “지적 재산권과 표준화(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라는 이름하에 공표한 문서는 지적 재산권과 표준화가 공존할 수 있는 원칙을 개별 산업에 대해 만들 경우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된다면 그 것은 곧 해당 산업의 제조업 후퇴를 초래하게 되고 유럽 전체의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지적 재산권과의 상관 관계속에서 펼쳐지는 표준화 정책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경쟁 질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상당히 시사적이다.

‘표준이 공정하고, 적절하며, 비차별적 조건에 의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모든 표준화 담당기구의 기본적이고도 핵심적 역할은 단순히 신기술의 확산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통해 기술, 산업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또한 전체 시장 경제의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요청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준화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저작권과 특허권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비밀, 고용자와의 고용계약, 상표, 신용, 기업의 명성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준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지적 재산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종합적 시각과 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III. 표준 관련 법규 및 제도

1. 국제표준

표준은 이해 당사자의 참여 범위와 그 정도에 따라 국제 표준, 지역 표준, 국가 표준, 단체 표준, 회사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 표준은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합의가 도출되는 표준으로서 법적 표준의 문제를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 차원에서 다루는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특히 컴퓨터 관련 국제 표준을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등에서 다루고 있다.

ITU가 제정하는 법률 문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그리고 업무 규칙이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제4조 제1항)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연합의 기본 문서로서 제일 우선 적용되어야만 하고, 협약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규정에 의해 보충된다. 업무 규칙은 협약과 협약의 규정을 보충하며, 구체적으로는 국제전기통신규칙과 전파무선규칙이 있다. 또한 업무 규칙과 협약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협약이 우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제 4조 제 4항) 따라서 현장→협약→업무 규칙의 순으로 법적 위계질서가 형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현장과 협약은 모두 국제법상 조약(treaty)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하거나 우월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현장 제 52조는 “이 현장과 협약은 서명 회원국에 의하여 그들 각국의 유효한 헌법 규정에 따라 하나의 법률 문서로서 동시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업무 규칙은 현장과 효력과는 달리 조약은 아니지만 구속력 있는 국제적 법률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국내법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현장과 협약이 국내법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함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총장에게 이들 법률 문서를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장 제 52조), 업무 규칙은 “--현장과 협약의 비준, 수탁, 승인 및 가입은 현장과 협약의 서명 이전에 권한있는 세계 회의에서 채택한 업무 규칙에 따를 것을 동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장 제 54조 제 2항)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차별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로는 현장과 협약의 서명 일자 이후에 채택된 업무 규칙의 개정은 “국내법이 허용한 범위까지 개정안에 서명한 모든 회원국에 잠정적으로 허용”됨을 규정함으로써 (동조 제 3항)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업무 규칙에 따르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여도 현장과 협약과는 달리 유보가 가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동조 제 2항과 제 3항) 때문이다.

한편, ITU가 채택하는 표준 (종전에 ‘CCITT

recommendation’로 불려졌지만 현재는 ITU-T로 불리우고 있음)에 대해서는 현장 제 3장이 ‘권고 (recommenda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 17조)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며, 법적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편입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한편, 국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규범으로는 우리 국회가 1994년 12월 16일에 비준한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동 협정은 상품 또는 공정 및 생산 방법과 관련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 판정 절차를 다루고 있고, 표준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정의하고 있다. (부속서1 제 2항)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 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가 다루는 표준은 강제적(mandatory)일 수도 있고 자발적(voluntary)일 수도 있지만 WTO에서 다루는 표준은 자발적인 것만을 다룬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 국회의 비준을 거친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하거나 우선되는 국제법으로 기능 하는 WTO조약은 표준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권고’적 성격을 갖는 자발적 문서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각 회원국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제 4조) 한편, 표준의 관련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적합판정절차 (procedures for assessment of conformity)가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세부적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제 5조 이하) 권고적 성격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특히 제3부속서(Annex 3)에 규정된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 (Code of Good Practice)

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은 중앙 정부 기관, 지방 정부 기관 또는 非정부 기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실질적 규정들 (D조 이하)을 통해 표준 기관은 “표준이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질 목적으로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E조), 표준을 채택하기 전에 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의 영토 내의 이해 당사자가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 60일 이상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L조)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제적 표준을 정하는 ITU의 권고안이나 WTO 조약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자발적 성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WTO 조약은 표준화 절차 자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적 표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2. 국내 표준

국내 표준을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표준’(정보통신부고시 제 1994-97호)과 ‘한국전산망표준’(정보통신부고시 제 1994-98호)이 있다. 전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29조와 전파법 제 28조의 2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후자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9조는 정보통신 표준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적합인증, 그리고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 표준과 국내 표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제 표준은 국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권고

적 성격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규범을 갖기 위해서는, 즉 법적(de jure)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를 채택하고, 고시(告示)하는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이러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법적 표준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 정책 또는 기술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필요성이 꼭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운영하여야만 기술 등의 환경 변화를 거슬리거나 오히려 기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IV. 맷음말

NII하에서는 모든 하부 구조가 전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자연스럽게 설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더욱 많게 되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망과 시스템이 진화되면 될수록 아날로그에서 표준에 대한 접근과는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식적이고도 법적 표준보다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이 자연발생적으로 먼저 만들어지더라도 정부나 공식적 기구의 일정한 역할이 반드시 요구되게 된다. 그러나 상이한 기술을 가진 여러 산업 분야의 이해와 갈등이 조정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공식적 표준 기구에 의한 표준 설정이 오히려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시에 필요한 표준을 만들어 내지 못할 위험도 내포한다는 점에서 어떤 한 기관에 의한 표준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이고 산업체에 의한 콘소시움, 정부, 규제 기관 등이 연합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체제가 요구될 수도 있다.

분명히 미국을 제외하고는 표준의 제정과 운

영이 대체로 정부 주도하에 각 나라의 산업 정책, 기술 정책과 연계되어 행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도 정부 주도의 표준화 논의가 주가 되고 사업자는 이를 필요에 따라 수용하는 소극적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등의 환경변화를 이유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선진국처럼 역전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표준화를 통한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 진출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같이 협력하는 체제가 우리에게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사실상의 (de facto) 국제 표준이 기술적 우월성보다는 시장 주도적 성격에 따라 몇몇 외국 기업들에 의해 선도되고 있고, ITU, WTO 등 국제 표준 규범을 만드는 기관들의 권고적 성격의 표준안이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술적, 산업적, 그리고 법적 제반 여건들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함은 물론, 이를 국내 및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 앞장서서 반영하고

다시 이를 전달하여 주는 중개자 내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표준이 단순히 상업적 이윤 획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참여와 투자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협력적 분업 체제를 만들어 가야만 함을 정부가 표준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유의하여야만 한다.

우리의 CDMA 기술 등 국내법으로 보호받고 외국의 특허법 등으로도 보호받게 됨으로써 선도(先導)기술을 둘러싼 보호와 활용의 문제는 단순히 표준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표준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의 문제는 현재의 지적 재산권 제도 자체가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상의 차원을 떠나서 중요한 산업적 지원 수단으로 기능함은 물론이고, 제도를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국가간 통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반드시 종합적 법·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접근되어야만 한다. 

